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7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희권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2. 2.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E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2003. 4. 15. 위 채권을 F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F유한회사는 2006. 10. 25. D에 대한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2011. 4. 26. 위 채권을 H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2) H유한회사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7362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9. 2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H유한회사에게 19,686,227원 및 위 돈 중 4,186,483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12.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H유한회사는 2019. 1. 25. D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D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1) D의 아버지인 망 I는 2021. 8.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와 자녀들인 J, K, L, D(상속지분 각 2/11)이 있었다.
- 2) 그런데 D은 2022. 12. 8.경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77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상속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자녀들도 모친인 피고의 생계를 위해 피고가 단독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망인의 사망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유언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도록 한 것이므로 애초에 D이 포기할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 망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실질적으로는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하여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점(민법 제1019조)을 고려할 때 재산적 측면에 있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D이나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D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구하므로,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빌라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내지 3층 각 184.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4㎡

2. 경상북도 문경시 답 2113㎡

3. 경상북도 문경시 전 10㎡

4. 경상북도 문경시 대 221㎡ 끝.

